

## ●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-48호

「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6월 17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### 「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

1)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

2)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,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

나.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

#### 3. 의견제출

「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**2024년 7월 8일까지**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(참조: 화학안전제도 개선TF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개정(안) 전문은 ‘화학물질안전원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기타 필요사항(참고자료)

라. 보내실 곳: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

○ 메일: [jjh8@korea.kr](mailto:jjh8@korea.kr)

○ 전화: 043-830-4383, FAX: 043-830-4398

※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<http://nics.me.go.kr>)